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1099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상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정

변론 종결 2020. 8. 20.

판결 선고 2020.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0,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49,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20. 3. 5.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에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①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및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광주시 G 중 원고의 551/2,535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9. 8.경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위 가.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H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용인시 처인구 I 외 1필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2.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위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다.항 기재 채권 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한 채권 관련 모든 금원과 근저당권설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채권공증은 피고가 2019. 12. 20. 원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제 및 취하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본건과 관련하여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특약

본건 관련 위약시 원고는 피고가 기존 공정증서에 의해 재집행하여도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가 채권상환총액금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추후 본 채권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고는 채권상환총액금의 배액을 보상하기로 한다.

해제할 목록

1.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근저당권
2.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 근저당권
3. 광주시 G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4. 용인시 처인구 I 외 1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5. 본건 관련 채권공증 일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이러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약정의 효력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750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강행법규인 이자제한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위 부제소 합의 역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 중 무효로 되는 부분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전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2,000만 원과 위 7,000만 원 합계 9,000만 원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지출액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취소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중 7,000만 원은 원고의 지연 이자와 피고가 지출한 보전비용 및 원고의 변제지체로 인하여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정산하여 모든 분쟁을 종결짓기로 합의한 금원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성격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이자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피고가 채권추심절차에 착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논의 과정에서 피고가 변호사 비용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 이후 피고의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한 집행해제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다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해서 이 사건 차용 및 그에 따른 담보, 강제집행 등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각종 근저당권, 가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압류신청을 취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2억 7,000만 원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게 된 계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의 구체적

액수를 알면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약정에는 단순히 금전지급의무만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근저당권말소 등을 해제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비용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일까지 약정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자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약정금 2억 7,000만 원 중 226,229,508원[=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9. 3. 4.부터 이 사건 약정일인 2019. 12. 10.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에 따라 발생한 차용원리금 246,229,508원(= 2억 원 $\times$ 0.3 $\times$ 282/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이자 2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나머지 43,770,492원(= 270,000,000원 - 226,229,508원)은 피고가 지출한 법률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래에서는 이를 나누어 판단한다.

2) 이 사건 약정금 중 226,229,508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이 사건 약정이 성립된 2019. 12. 10. 기준 이 사건 차용에 따른 채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4%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잔존원리금을 계산하면, 216,718,936원(= 원금 198,249,071원 + 이자 18,469,865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2019.0 4.05.	5,000,0 00원	200,00 0,000	2 4	2019.0 3.04.	2019.0 4.05.	4,327, 868	4,327, 868	1	4,327 ,868	672,1 32	199,32 7,868	-
2019.0 5.05.	5,000,0 00원	199,32 7,868	2 4	2019.0 4.06.	2019.0 5.05.	3,921, 203	1,921, 201	2	3,921 ,203	1,078 ,797	198,24 9,071	-
2019.0 6.27.	5,000,0 00원	198,24 9,071	2 4	2019.0 5.06.	2019.0 6.27.	6,889, 967	6,889, 967	3	-	5,000 ,000	198,24 9,071	1,889, 967
2019.0 7.29.	5,000,0 00원	198,24 9,071	2 4	2019.0 6.28.	2019.0 7.29.	4,159, 980	6,049, 947	4	1,049 ,947	3,950 ,053	198,24 9,071	1,049, 947
2019.1 2.10.	-	198,24 9,071	2 4	2019.0 7.30.	2019.1 2.10.	17,419 ,918	18,469 ,865	5	-	-	198,24 9,071	18,469 ,865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는 2019. 12. 10.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226,229,508원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중 2019. 12. 10. 기준으로 한 원고의 채무 216,718,936원을 초과하는 9,510,572원(= 226,229,508원 - 216,718,936원)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로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위 9,510,57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43,770,492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226,229,508원을 제외한 나머지 43,770,492원이 대여금의 변제가 아닌 법률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가 실제 채권추심비용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계약의 대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권추심비용 등으로 위 돈을 지급받고 근저당권과 가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것은 당사자의 분쟁에 관한 화해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피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광주 땅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과 2억 6,000만 원을 요청하자 이에 대한 조율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약정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한 채권추심비용 내지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의 존재와 범위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금원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9,510,5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유진